



미국,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김윤진 연구원

요약

2023년 3월부터 미국에서 연달아 발생한뱅크런 사태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찬성 입장은 물가상승률, 비보호 예금액 증가, 기업계좌 운영 효율성 등을 근거로 한도 상향을 주장함. 반대 입장의 근거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확대, 비용 대비 실익 부족, 정부 개입에 따른 비효율 등이 있음. 미국 FDIC는 5월 예금보험개혁 옵션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등 특정 예금주에 대해 보호 한도를 선별적으로 상향하는 옵션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함

- 2023년 3월 SVB(Silicon Valley Bank)와 Signature Bank 파산, 이후 5월 이어진 FRC(First Republic) 은행의 파산으로 미국에서 뱅크런 위험과 이와 관련한 예금자보호한도 문제가 이슈로 대두됨
 - 2023년 3월 발생한 SVB, Signature Bank의 파산은 미국 예금보험제도 도입 이후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은행파산이었고 뱅크런에 따른 연쇄적 은행파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미국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불안을 증대시킴
 - 이에 미 재무부에서는 두 은행의 파산에 '시스템리스크 조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까지 포함하여 모든 예금주를 보호하기로 조치함
 - 미국의 현행 예금보호제도는 은행파산 시 250,000달러 한도에서 예금주를 보호하고 있는데, 최근 연속된 뱅크런 사태로 금융 전문가 및 관련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¹⁾
 - 디지털 뱅킹 등 금융기관 디지털화로 예금주들의 현금 인출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인터넷 은행 등 뱅크런에 취약한 금융기관을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예금자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 비보호 예금액 증가, 기업계좌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주들을 보호하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함²⁾
 -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8년 250,000달러로 설정된 이후 조정된 적이 없는데,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재 시점의 예금자보호한도는 약 350,000달러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추산됨
 - 미국 내 250,000달러를 초과하는 비보호 예금이 2021년 기준 전체 은행 예금액 중 46.6%(2022년 기준 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비보호 예금액은 미국 상위 10% 은행들의 자산구성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기업에서는 하나의 계좌에서 비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가계와 기업

1) Kiplinger(2023. 6), "Will the FDIC Raise the Deposit Insurance Limit?"

2) Brookings(2023. 5), "A debate: Should the US raise the \$250,000 ceiling on deposit insurance?"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원칙을 적용하여 계좌 당 250,000달러 이내 예금주만 보호한다는 점에서 수취채권, 급여 등 거래 단위가 큰 기업의 비용 관리에 맞춘 합리적 보호제도가 부재함

-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예금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에 대한 예금보험 제도를 구분하여 기업(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자보호한도만 부분적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함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미국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안정적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한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반대 근거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확대, 비용 대비 실익 부족, 정부 개입에 따른 시장 비효율 등이 있음³⁾

-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은행이 예금 자산을 더 위험한 투자처에 투입할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보다는 현재 미국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은행의 지나친 투자와 투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변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⁴⁾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은 도덕적 해이가 초래할 금융 불안 등 향후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융안정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함
- 예금주 대부분(99%)이 현행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므로 한도 상향의 혜택이 일부 고액 예금주에게만 적용되는 등 소비자 실익을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라 소액 예금주, 소규모 은행 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 FDIC는 예금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의 더 높은 수수료 부담이나 더 낮은 이자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부담하는 소비자는 250,000달러 이내 예금을 보유한 개인일 확률이 높음
 - 지방 중소은행은 은행 내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수의 고액 예금주를 위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음
- 한도 상향은 곧 금융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며, 이는 한도 상향에 따른 감독체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존재하나 금융감독의 효과는 더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추가적으로 굳이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자산부채이전(Purchase & Assumption agreement)⁵⁾이나 비보호 예금 비율 규제 등 다른 방안에 따라 예금주의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는 기타 의견도 있음

○ 이러한 의견 대립 가운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2023년 5월 예금보험 개혁을 위한 옵션을 제시하였고, 그중 중소기업 등 특정 계좌에만 더 높은 보호 한도를 적용하는 옵션이 금융안정, 은행의 리스크 및 자금 관리, 시장 확장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설명함⁶⁾

- FDIC는 예금보험개혁 옵션으로 ① 체계는 유지하고 한도만 상향하는 Limited Coverage, ② 모든 예금주를 보호하는 Unlimited Coverage, ③ 특정 예금주에게 선별적으로 높은 한도를 적용하는 Targeted Coverage를 제안함
- FDIC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 6월 7일 미 국회에서는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예금주에 한하여 FDIC가 예금보험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예금보험법 개정을 위한 법안(Deposit Insurance Reform Act)이 발의됨⁷⁾

3) Brookings(2023. 5)

4) FT(2023. 5), "Unpicking the US deposit insurance debate: Change incentives rather than fiddle around with limit levels"

5)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부실 금융기관 정리 방식 중 하나임

6) FDIC(2023. 5), "Options for deposit insurance reform"

7) H.R.3928 - Deposit Insurance Reform Act of 2023